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장주식 의원외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4월 13 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14 일

3. 제안 이유

-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인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확산함으로써,
- 기업인이 신바람 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4. 주요내용

-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우수기업인(안 제2조)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중소기업인
 -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 정부에서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 기타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 (안 제5조)

-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 매년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은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 이내
- '으뜸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제품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
-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

○ 창업지원, 품질경영 활동지원, 판로개척, 입지지원, 기업지원 관련 단체 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3조)

-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위한 기업애로지원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 15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기적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가들에게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구축하여 경쟁력 제고 및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최근 환율의 급락과 유가의 급등, 노동 임금의 상승 등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황이 깊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수기업인을 선정·시상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 도입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애로지원협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과 기업인이 존경받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투자확대와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